

제1조 【 목 적 】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제공자’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이용자’(또는 ‘대리인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이용자’(또는 ‘대리인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제공자’에게 회신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이용자’(또는 ‘대리인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 (단, 시설 정원이나 이용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.)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.
- ⑥ ‘이용자’(또는 ‘대리인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제3조 【 입소 · 이용료 납부 】

- ① ‘이용자’의 입소당월 첫날에 선납 하기로 한다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첫날 납부하기로 한다. (첫날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 선불기준
(예-2024.01.01.입소시는 01.01일에 1월1일~1월31일분의 비용을 지불한다)
- ② ‘이용자’ (또는 보호자 ‘대리인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.
- ③ ‘이용자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("농협 351-1323-8769-63" 예금주 더사임당재활요양원)로 한다.
- ④ ‘이용자’ 또는 ‘대리인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.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.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이용자’ 또는 ‘대리인’이 별도 부담한다.

제4조 【 계약자 의무 】‘이용자’와 ‘제공자’ 그리고 ‘대리인’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
- ① ‘이용자’의 의무
 1. 월 이용료 납부
 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 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 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 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- ② ‘제공자’의 의무
 1. ‘이용자’의 건강관리 협조
 2. ‘이용자’의 신변이상을 ‘대리인’에게 즉시 연락

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5. 기타 ‘이용자’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③ ‘대리인’의 의무

1. ‘이용자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2. ‘이용자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4. ‘이용자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제공자’에게 통보
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
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

① ‘이용자’의 해지

1. ‘이용자’와 ‘대리인’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제공자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제공자’의 해지

1. ‘이용자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‘이용자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(단, ‘제공자’는 ‘이용자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이용자’ 또는 ‘대리인’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제6조 【 퇴소 】

① ‘제공자’는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‘이용자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‘이용자’와 ‘대리인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

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제공자’에게 제출하고 ‘제공자’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대리인’(또는 ‘이용자’)에게 통보 후 ‘제공자’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이용자’ 또는 ‘대리인’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
③ ‘제공자’는 ‘이용자’가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이용자’가 지정한(또는 ‘대리인’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.

제7조 【 입소물품 】 ‘이용자’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‘제공자’와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제8조 【 면회 및 외출·외박 】

① ‘이용자’의 면회시간은 매일 10:00시부터 17:00까지로 한다

(단 ‘이용자’와 ‘제공자’ 또는 ‘더사임당재활요양원’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
② ‘이용자’는 외출·외박 시 사전에 ‘제공자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‘제공자’가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이용자’나 ‘대리인’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

‘제공자’와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
④ 외출·외박 중 ‘이용자’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이용자’ 또는 ‘대리인’은 ‘제공자’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제9조 【 시설관리 】

① ‘제공자’는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‘제공자’는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제10조 【 건강관리 】

① ‘제공자’는 ‘이용자’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‘이용자’와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‘이용자’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‘이용자’ 또는 ‘대리인’에게 별도 징수한다.

④ ‘제공자’는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⑤ ‘제공자’는 ‘이용자’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
⑥ ‘제공자’는 ‘이용자’의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 시 지체없이 ‘대리인’에게 통보한다.

⑦ ‘제공자’는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11조 【 시설물 배상 】

① ‘이용자’는 ‘제공자’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‘이용자’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‘이용자’ 또는 ‘대리인’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
② ‘이용자’ 또는 ‘대리인’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‘제공자’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‘이용자’ 또는 ‘대리인’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12조 【 위급시 조치 】

① ‘제공자’는 ‘이용자’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‘이용자’(또는 ‘대리인’)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‘대리인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‘다사임당재활요양원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③ ‘이용자’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‘제공자’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‘대리인’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 단 ‘대리인’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‘제공자’가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
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‘제공자’은 ‘이용자’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

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'대리인'과 정산할 수 있다.

제13조 【 임종 및 장례 】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대리인'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2. 장례는 '대리인'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② 무연고자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제공자'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 】

① '제공자'은 1일 3식 및 간식을 '이용자'에게 제공하며, '이용자'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'이용자' 또는 '대리인'이 별도 부담한다.

② '제공자'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'이용자'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 【 영양실의 배정 】'이용자'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'이용자'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'이용자' 또는 '대리인'의 의견을 반영하여 '제공자'이 조정할 수 있다.

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

① '제공자'은 '이용자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
② '제공자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이용자'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
③ '이용자'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) 으로 한다.

④ '이용자'는 '제공자'가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
⑤ '제공자'은 '이용자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.

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8조 【 배상책임 】

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제공자'는 '이용자'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
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이용자'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‘이용자’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‘이용자’를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4. 학대(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)로 인하여 ‘이용자’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,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‘이용자’은 ‘제공자’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.

1.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

2. ‘제공자’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‘이용자’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3. ‘이용자’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4. ‘이용자’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

제19조 【 이용계약서의 해석 】

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.

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.